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의 안 번 호 2118

제출연월일 : 2024. 7. 22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「국방개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방개혁위원회 등을 해당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해당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공무원 중심으로 하되,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국방개혁에 관한 법률」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「국방개혁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"지속적이고"를 "국방부장관은 지속적이고"로, "국방부장관 소속하에"를 "필요한 경우"로, "둔다"를 "구성·운영할 수 있다"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"국방·안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"를 "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국방·안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방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.
- 제2조(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의 개정)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"도"를 "도·특별자치도"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군 공항 이전후보지"를 "국방부장관은 군 공항 이전후보지"로, "국방부에"를 "필요한 경우"로, "둔다"를 "구성·운영할

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선정위원회에"를 "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에"로, "둔다"를 "구성·운영할 수 있다"로 한다.

-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, 필요한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공항시설 또는 군 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 하여 구성할 수 있다.
- 1.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, 국토교통 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
- 2.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
- 3.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
- 4.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
- ④ 국방부장관은 선정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.

제20조제1항 중 "이전주변지역에"를 "국무총리는 이전주변지역에"로, "국무총리 소속으로"를 "필요한 경우"로, "둔다"를 "구성·운영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구성하되,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"를 "구성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

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지원위원회에"를 "필요 한 경우 지원위원회에"로, "둔다"를 "구성·운영할 수 있다"로 한다.

- ③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, 필요한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.
- 1.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, 국방부차 관, 행정안전부차관,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
- 2.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
- 3.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)
-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제5항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.
- ⑤ 국무총리는 지원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.

제21조제1항 중 "광역시장 또는 도지사"를 "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"로 한다.

제23조 중 "광역시장 또는 도지사"를 "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"로 한다.

제3조(「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군보건의료에 관하여"를 "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에 관한"으로, "국방부에"를 "필요한 경우"로, "둔다"를 "구성·운영할 수 있다"로 한다.

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.
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으로 하고, 위원은 제1호와 제2호의 사람으로 하되, 필요한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있다.
- 1.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방부장관 이 지명하는 사람
- 2.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
- 3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 무원
- 4.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- ③ 국방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.
- 제4조(「군인복지기본법」의 개정)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"군인에"를 "국방부장관은 군인에"로, "국방부에"를 "필요한 경우"로, "둔다"를 "구성·운영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,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및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 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, 필요한 때에는 성별을 고 려하여 위촉하는 군인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.
- ⑥ 국방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.
- 제5조(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의 개정)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"을 "국방부장관은 다음"으로, "국 방부장관 소속으로"를 "필요한 경우"로, "둔다"를 "구성·운영할 수 있다"로 한다.

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, 위원은 제1호의 사람으로 하되, 필요한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.
- 1. 합참의장,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
- 2.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- 3. 군인의 기본권 보장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.
- ④ 국방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 정 안
제6조(국방개혁위원회) <u>지속적이</u>	제6조(국방개혁위원회) <u>국방부장</u>
<u>고</u> 일관된 국방개혁을 추진하	관은 지속적이고
고 국방개혁과 관련된 중요 정	
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<u>국</u>	
<u>방부장관 소속하에</u> 국방개혁위	<u>필요한 경우</u>
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	
<u> 둔다</u> .	<u>구성·운영할 수 있다</u> .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	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
략)	같음)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	2
관이 되고, 위원은 관계중앙행	
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	
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, 필	
요한 때에는 <u>국방·안보 관련</u>	<u>성별을 고려하여</u>
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.	위촉하는 국방・안보에 관한
	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
	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
	<u>있다</u> .
<u><신 설></u>	③ 국방부장관은 위원회의 구
	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
	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
	<u>할 수 있다.</u>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
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"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"란	6
종전부지를 관할하는 시・군	
·구 또는 특별시·광역시·	
<u>도</u> 를 말한다.	<u>도·특별자치도</u>
7.・8. (생 략)	7.・8. (현행과 같음)
제6조(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	제6조(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
원회) ① 군 공항 이전후보지	원회) ① <u>국방부장관은 군 공</u>
및 이전부지의 선정과 이전주	<u>항 이전후보지</u>
변지역의 지원 방안 등을 심의	
하기 위하여 <u>국방부에</u> 군 공항	
이전부지 선정위원회(이하"선	필요한 경우
정위원회"라 한다)를 <u>둔다</u> .	
	<u>구성·운영할 수 있다</u> .
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	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
하고,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	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
호의 사람으로 하며, 위촉위원	람으로 하되, 필요한 때에는
은 이전부지 선정을 위하여 필	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공
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	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
이 의초하느 사라ㅇㄹ 하다	과하 하신과 견허이 푸부하 사

- 1. 기획재정부차관, 국토교통부 | 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 차관
- 2.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
- 3.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 의 장
- 4.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 을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

③ (생략) <신 설>

④ 선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 원회(이하 "선정실무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할 수 있다.
- 1.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 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,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 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
- 2.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
 - 3.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 의 장
 - 4.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 을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 시장・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
 - ③ (현행과 같음)
 - ④ 국방부장관은 선정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.
 - ----- 필요한 경우 선 정위원회에 ---------- 구성・운 영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- 제20조(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) ① <u>이전주변지역에</u> 대한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<u>국무총리 소속으로</u>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(이하 "지원위원회"라 한다)를 <u>둔다</u>.
 -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당연직위원 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,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, 위촉위원 은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 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 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 - 1. 기획재정부차관, 국방부차관, 행정안전부차관, 국토교통부차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
 - 2.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

<u>(b)</u> (연행 세5앙과 같음	」)
제20조(군 공항 이전사역	업 지원위
원회) ① 국무총리는	이전주변
지역에	
	필요
한 경우	
	<u>구성 • 운</u>
영할 수 있다.	
②	
<u>구성한다</u> .	

- ③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람으로 하되, 필요한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군 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 할 수 있다.
 - 1.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 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, 국방부차관, 행정안전부차관,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 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

지사

3.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・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. 연임할 수 있다. 다만.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 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 <신 설>

- ⑤ (생략)
- ⑥ 지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실무위 원회(이하 "지원실무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⑦ (생 략)

-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
 - 2.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
 - 3.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・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
 -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제5항 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해산되 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. ⑤ 국무총리는 지원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.
 - 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
 - ----- 필요한 경우 지원위원회에 -----

 - 구성• 운영할 수 있다.
 - 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

제21조(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・ 제21조(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・

개발) ① 특별시장·<u>광역시장</u> 또는 도지사는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을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 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 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 략)

제23조(종전부지 처리 시 사전협의) 종전부지가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· 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개빝	<u>l</u>) (1)			<u>광</u>	역시장
• 5	E지사	또는	특별	자치	도지사
			7). Ó		·•
(2) •	(3)	현행과	(살음	-)	
제23조	소(종전	[부지	처리	시	사전협
•		[부지 			사전협
					사전협
의) 					사전협
의) 	 		 - <u>광역</u>	 시장	
의) 	 		 - <u>광역</u>	 시장	· 도지
의) 	 		 - <u>광역</u>	 시장	· 도지
의) 	 		 - <u>광역</u>	 시장	· 도지
의) 	 		 - <u>광역</u>	 시장	· 도지
의) 	 		 - <u>광역</u>	 시장	· 도지
의) 	 		 - <u>광역</u>	 시장	· 도지
의) 	 		 - <u>광역</u>	 시장	· 도지

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

제7조(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 제7조(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국방부에 군보건의료발전추 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 다)를 둔다.

1. ~ 4. (생 략)
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 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략)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으로 한다.

개 정 안

회) 군보건의료에 관하여 다음 회)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 에 관하 ---------- 필요한 경 운영할 수 있다.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같음)
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으로 하고, 위원은 제1호 와 제2호의 사람으로 하되, 필 요한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 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.
 - 1.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 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
 - 2.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장관 이 지명하는 사람
 - 3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

-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으로 한다.
- 1. 국방부 보건복지관
- 2. 국군의무사령관
-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- 1.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
- 2.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
- <u>⑤</u> (생 략)

-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
- 4.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③ 국방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.

<u>④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아 혅 제8조(군인복지위원회) ① 군인에 제8조(군인복지위원회) ① 국방부 장관은 군인에 -----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그 시 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복지위원 ---- 필요한 경우 -----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 성 · 운영할 수 있다. 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③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 ③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 고. 위원은 군인복지정책에 관 고,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 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직 공무원 및 국방부 소속 공무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 및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거나 임명하되,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군인 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한다.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 여 구성할 수 있다. ④·⑤ (생략) ④·⑤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⑥ 국방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. 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 ⑥ (생 략)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했

제8조(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제8조(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 <u>속으로</u>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 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 다.

1. ~ 5. (생 략)
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생 략)

-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람으로 한다.
- 1. 합참의장,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
- 2.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 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
- 3. 군인의 기본권 보장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 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

개 정 안

설치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설치) 국방부장관은 다음 -------- 필요한 경우 ---

- •운영할 수 있다.
- 1. ~ 5. (현행과 같음)

| 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현 행과 같음)

-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, 위원은 제1호의 사람으 로 하되, 필요한 때에는 성별 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.
 - 1. 합참의장,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
 - 2.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 - 3. 군인의 기본권 보장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

- 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 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
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⑤ (생략)

-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제4항 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때 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 다.
 - ④ 국방부장관은 위원회의 구 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 할 수 있다.

⑤ (현행과 같음)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「국방개혁에 관한 법률」 제6조(국방개혁위원회)	
2	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1항(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)	
3	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제1항(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)	필요한 경우 위원회를
4	「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7조(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)	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
5	「군인복지기본법」 제8조제1항(군인복지위원회)	
6	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8조(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)	
7	「국방개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항(위원회의 구성)	
8	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2항(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)	
9	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제3항(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)	위원회의 구성 시, 필요한 때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
10	「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항(위원회의 구성)	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
11	「군인복지기본법」 제8조제3항(군인복지위원회)	
12	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9조제2항(위원회의 구성 등)	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「국방개혁에 관한 법률」	
1	제6조(국방개혁위원회)	
2	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	
	제6조제1항(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)	
3	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	
3	제20조제1항(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)	
4	「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	
4	제7조(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)	
5	「군인복지기본법」	
	제8조제1항(군인복지위원회)	
6	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	
0	제8조(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)	제1호: 예상 비용이 연평균
7	「국방개혁에 관한 법률」	10억원 미만
_ ′	제8조제2항(위원회의 구성)	
8	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	
0	제6조제2항(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)	
9	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	
9	제20조제3항(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)	
10	「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	
10	제8조제2항(위원회의 구성)	
11	「군인복지기본법」	
11	제8조제3항(군인복지위원회)	
12	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	
12	제9조제2항(위원회의 구성 등)	

2. 상세 사유

O 현재 각 위원회의 연간 운영 예산이 0원~1억원 미만이므로,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○ 본 개정 법률안은 연간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하여, 법률에서 해당 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명시한 것을 필요시에만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것임.

Ⅳ. 작성자

O 성명

담당자	과장	국장
서기관 강태백	서기관 안영신	고위공무원 김경욱

O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서기관 강태백	02-748-6571	precedo@korea.kr